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관람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
가.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	법 제43조 제3항제1호	250만원	350만원	500만원
나. 법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43조 제3항제2호	250만원	350만원	500만원
다.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제1호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
라. 법 제1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,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1항제1호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마.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1항제2호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바.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	계상하지 않은 금액 (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)		
사.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	용도 외 사용 금액 (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)		
아. 법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3항제3호	250만원	350만원	500만원
자.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3항제4호	250만원	350만원	500만원
차.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4항제1호	150만원	200만원	300만원
카.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3항제5호	300만원	400만원	500만원
타.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3항제6호	300만원	400만원	500만원
파. 법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3조 제3항제7호	300만원	400만원	500만원
하.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1항제3호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거.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)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, 등록 전 안전검사,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	법 제43조 제2항제2호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

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)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	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
너.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 제3호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
더.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4항 제2호	150만원	200만원	300만원
러. 법 제32조에 따른 수거·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2항 제4호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